

「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 외 24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규정(안 제2조~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11조)
- 기금관리 공무원,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~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

- 부서검토 : 예산재정과, 기업투자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